

## 初期 韓·獨 外交關係에 對한 小考

—밀렌도르프의 外交活動을 中心으로—

李      命      守

行政學科

(1985. 4. 30 접수)

### 〈要 約〉

本論文은 비스마르크(Bismarck)의 歐州 外交政策과 極東外交를 살피고 또한 밀렌도르프(Möllendorff)가 李鴻章의 推薦과 國王高宗의 要請으로 韓國에 赴任하여 官職을 任命받아 그가 在任 3년여 期間中 어떻게 朝鮮王朝 政府를 代辦하여 外交交涉과 活動을 展開하였는가를 觀察하고 또한 그가 朝鮮王朝의 政治·外交·經濟·社會·文化·軍事 等各 分野에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왜 官職을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真相을 第1次 朝·露密約 및 巨文島 事件과 結付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가 왜 英·中兩國과 露國과의 理解關係對立에서 懷疑되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韓國近代化 過程과 關聯시켜 考察하였다.

## A Study of the Korean-German Diplomatic Rela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Möllendorff's Diplomatic Activity in Korea

Lee, Myung-s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Received April 30, 1985)

### 〈Abstract〉

This paper is going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motive of Möllendorff's appointment to the post of vice-President of the Foreign Board and the Chief director of Customs Service in Korea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Viceroy Li Hung-chang and also clarify the development of Möllendorff's scheme of Russian Prot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British Foreign Policy and Li Hung-chang's suzerain policy toward Korea. It will also explain the real fact of the socalled Möllendorff's intrigues with Russia and his dismissall from the above posts including the British occupation of port Hamilton.

### I. 序 論

밀렌도르프(möllendorff)는 中國北洋大臣 李鴻章의 推薦과 朝鮮政府의 要請으로 韓國에 건너와 朝鮮王朝 政府로 부터 官職을 任命받아 勤務하게 된 最初의 西洋人이 있다. 本論文은 總督 前後로 비스마르크(Bismarck)의 歐州 外交政策을 살핀 후 밀렌도르프가 中國에서 朝鮮에 건너와 赴任하게 된 背景을 비롯하여 그가 在職한 3여년간 朝鮮王朝의 政治, 外交, 經濟, 社會, 文化 等各 分野에 걸쳐 끼친 功過를 英·美·中·韓 資料와 이미 發表된 그에 대한 論文에 의해 檢討하고 그가 官職을 떠나게 된 動機가 되었던 이론과 第1次 朝·露密約의 真相과 또한 英艦의 巨文島 占領事件을 關聯시켜 그의 辞任을 詳細히 밝히는데 있다.

## II. 「비스마르크」의 外交政策과 極東外交

1871年 獨逸帝國의 建設은 비스마르크(Bismarck)가 全獨逸의 統一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푸러시아(Prussia) 王과 그 軍隊를 利用하여 成功하였다는 事實에서 19世紀의 가장 큰 政治的 事件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러한 統獨政策을 歐州에서 가장 強力한 上記 軍隊를 動員하여 1864년 덴마크(Denmark)와 1860年 오스트리아(Austria)와 1870年에는 佛蘭西(France)와의 3個戰爭을 勝利로 이끌으로써 成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스마르크가 統獨政策을遂行할 수 있었던 것은 1862年 그가 푸러시아內長官職을 訂도록 召命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이미 自身의 이리한 政策을 具體化시키고자 萬般의 準備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는 젊어서부터 軍人이며 나폴레옹(Napoleon) 3世와 數次 戰爭을 經驗한 월비암(Kaiser William) 1世 政府下의 푸러시아 軍隊가 完全히 再組織되어 있는 狀態에서 新長官으로 被任되였기에 그는 이 自身의 計劃을 成功시키는 데 必要한 實力を 積蓄하였던 것이다. 多幸히 1863年 덴마크와 獨逸聯邦內에 슈레스비크(Schleswig)와 홀스탈린(Holstein) 兩地域問題로 發生한 紛爭은 그가 바라는 機會를 提供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푸러시아와 함께 共同步調를 取하도록 說得하면서, 既述한 바와 같이 1864년 덴마크와 開戰하면서 結局 푸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덴마크의 統治者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獨逸聯邦의 一員으로 存續하고 있는 限 獨逸이 푸러시아의 支配下에 統一될 希望은 없을 것이라는 實實을 直視한 비스마르크는 슈레스비크와 홀스탈린 兩地域의 分割로 惹起될 紛爭을 故意로 阻止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그의 軍隊와 外交의措置로써 完璧하게 全獨逸의 主導權을 決定한 오스트리아와의 戰爭을 事前에 對備하고 있었다. 이때 푸러시아 軍隊는 最高度의 能力を 具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스마르크가 라인(Rhine)에 대하여 佛蘭西에 賠償金을 支拂한다는 代價로써 나폴레옹 3세로부터 好意的 中立을 保障받고 있어서 萬若 그가 오스트리아를 攻擊하더라도 이태리(Italy)의 積極的 支持마저 獲得할 수 있는 狀態下에 있었다. 이러한 理由로 1866年 勃發한 오스트리아와의 戰爭을 簡單히 끝낼 수 있어서 비스마르크는 自己의 希望을 完全히 實現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곧 統獨을 為한 第一段階措置였다.

그리하여 新北獨逸聯邦이 군건히 構成되고 푸러시아에 依한 強力한 政體가 形成되었다.<sup>(1)</sup>

그러나 그는 나머지 南獨逸(South Germany), 바덴(Baden), 바바리아(Bavaria) 및 부르템버거(Württemberg)等 諸國을 統一하기 為해서는 獨逸의 國敵인 佛蘭西와 利害關係에 背馳되고 또한 南北獨逸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 안될 第3戰爭의 必要性을 感知하였는데 이것이 곧 1870年 獨·佛戰爭이었다. 이때 南獨逸은 오히려 北獨逸聯邦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共同敵國인 佛蘭西와 싸워 그 結果 獨逸은 佛蘭西로부터 알사스-로렌(Alsace-Lorraine)地域을 빼고 또한 5億프랑의 賠償金을 받아내는 等 프랑크푸르트 條約(Treaty of Frankfort)을 締結하였다. 특히 佛蘭西에 대한 이러한 國家的 戰勝을 通해 南獨逸聯邦이 統獨國家로 編入되도록 說得한 비스마르크의 希望은 實現될 수 있었고 이로 因해 푸러시아 王은 獨逸皇帝로 宣布되어 全獨逸國家의 統治者가 됨에 따라 歐州에서 새로운 政治的 國家(Palitical State)가誕生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비스마르크를 비롯한 獨逸國民의 가슴 속에는 “힘이 곧 正義(Might is Right)”라는 힘에 대한信念(A Faith in Force)을 갖게 되는 同時에 獨逸이 統一된 以後에도 이와 같은 힘에 대한 崇尚이 獨逸의 生命과 歷史의 進路를 크게支配하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그가 執政했던 20年이란 期間 동안 그가 일찍追求했던 戰爭과 亂暴했던 힘에 依한 政策을 抛棄하고 오히려 平和的 方法으로 現狀維持政策(Status Quo)을 講究하며 外國과의 共存을 期하는 反面, 獨逸의 發展을 폐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訂立하고 나갔던 것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사스-로렌地方을 夷失한 佛蘭西는 獨逸을 完全히 不信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그의 平和政策을遂行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佛蘭西는 公公然히 反獨逸聯合戰線(Anti-German Coalition)을 構想하였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佛蘭西의 反獨政策을 阻止하고 現狀維持策

(1) Charles Seymour, "The Diplomatic Background of the War 1870—1914,"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6., pp.1~8.

(2) Ibid., pp.9~14.

을 持續하기 爲한 最善의 手段으로써 外交的結合策을 構築하였다. 即 그는 밤판(Balkans)의 利害關係로 獨·佛戰爭期間中 友好的인 中立을 지킨 露國과 푸리시아人の 主導에 依한 統獨을 反對하지 안했던 오스트리아를 各各 獨逸과 政治的으로 結合하여 佛蘭西를 孤立시키면서 虛弱한 佛蘭西(Weak France)로 만드는 것이 곧 그의 外交政策의 根幹(the keystone of his foreign policy)이었다.<sup>(3)</sup> 그러나 그의 佛孤立化政策은 1875年 佛·獨危機와 1878年 近東(Near East) 地域事態로 밤판에서 오스트리아와 露國이 對敵關係로 急變할 危機를 넘긴 뒤 이른바 獨·奧·伊間의 三國同盟(The Triple Alliance)을 結成함에 이어 1884年과 1887년에 露國과도 第3國의 攻擊時 相互中立을 지킨다는 條約締結로 具體化 되는 등 事實上 그는 歐州外交의 主導權을 掌握하여 國內問題의 解決策講究에 愈念이 없었기 때문에<sup>(4)</sup> 그는 檯東의 現狀維持를 바랄 뿐 事實上이 地域을 돌아볼 거를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하겠다.

### III. 李鴻章의 推薦과 월렌도르프의 赴任

高宗政府가 開化政策의 一環으로 中國北洋大臣 李鴻章이 自請한 居中斡旋에 依해 1882年 5月 22日 朝·美兩國代表間에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한지 2個月만에 「壬午軍亂」이 發生함에 따라 中國政府가 이를 奇貨로 丁汝昌 및 吳長慶 좌하 軍隊를 一方의으로 朝鮮에 派遣하여 國王高宗으로부터 正式으로 政權을 委任받은 大院君을 誘引, 強制拉致해서 天津으로 移送함으로써 高宗의 再執權을 可能케 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事實이다.<sup>(5)</sup>

그리하여 高宗政府는 8月 19日(陰 7月 16日)付 兵曹判書 趙寧夏, 工曹判書 金宏集을 各各 正副使로 任命하고 事大派 李祖潤, 李容薰, 卞元圭 等으로 構成된 陳奏使節團을 大院君의 拘置와 關聯한 그의 早期釋放을 交渉하기 爲하여 中國에 派遣하였다. 그러나 이들 趙·金兩代表는 이미 3次에 걸쳐 馬建忠이 提議한 借款導入問題를 討議한 實務者이기 때문에 李鴻章과 同借款問題를 具體化하고<sup>(6)</sup> 나아가서는 이른바 「善後六條」問題를 協議하여 政局安全策을 圖謀하는 同時に 兩國間의 關係強化를 하는 데 그目的이 있었다.<sup>(7)</sup> 이어 한 動機와 目的下에 馬建忠一行과 함께 9月 5日(陰 7月 24日) 天津에 到着한 趙寧夏一行은 9月 7日 馬建忠과의 會談에서 大院君의 諸國은 오히려 國王과의 權力鬭爭을 加熱시킬 것이라는 理由로 그의 不釋放方針을 通告받은 뒤<sup>(8)</sup> 9月 12日(陰 8月 1日) 北洋大臣 李鴻章과 會談을 가졌다. 이날 筆談에서 李鴻章은 趙寧夏正使가 提出한 安民志, 用人才, 整軍制, 理財用, 變律例, 擴商務 等 이른바 「善後六條」中 擴商務一條內에 “우리나라는 商務關係를 如何히 處理해야 될지 모르며 지금 現在 開港地에 稅關을 設置코자 한다. 이 分野에 專門人을 雇用하여 稅關權을 管掌하고자 한다.”<sup>(9)</sup>는 内容을 보고 朝鮮政府가 美·英·獨諸國과의 通商條約締結에 따라 上記條約이 批准되기 前 稅關設置에 따른 專門家를 招聘하려는 計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趙正使로부터 朝鮮이 日本과 通商한지 7年 동안 아직 關稅를 徵收하지 않고 있는 事實을 確認한 李鴻章이 그에게 朝鮮國王이 이를 正式으로 要請하는 親書를 보내면 協力하겠다는 뜻을 表明에 따라 國王高宗은 10月 28日(陰 9月 17日)付 “小邦은 外務를 잘 모른다. 各國과 締結한 條約의 批准書交換이 目前에 迫頭號으나 一切의 交涉 商辦事務는 漠然한 뿐 손댈 수 없다.……” 「賢明練達之士」을 代身 招聘시켜 指導해 주길 李鴻章에게 要請하는 書翰을 보냈던 것이다.<sup>(10)</sup>

(3) Ibid., pp.15~16.

(4) Ibid., pp.17~37.

(5) Park Il-Keun, "China's Policy toward Korea: 1880~1884,"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韓國研究院 No. 53 (June 1981), pp.45~76 參照.

(6) 朴日根, “高宗朝의 對華借款策”－馬建忠의 紛糾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論叢, 第15輯, 人文社會科學篇, 1973, pp.343~365 參照.

(7) 朴日根, “甲申政變의 再評價”－甲申政變은 自律的 事件이 있다－, 韓國政治外交史學會編, 論叢 第1輯, (서울:평민사, 1985), pp.198~239 參照.

(8)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編, (以下 中研) 清季 中日韓國關係史料, 第3卷, 光緒 8年 7月 26日 與朝鮮大官 趙寧夏, 金宏集, 李祖潤筆談 問答, pp.892~895.

(9) …該國王請示善 善後六條, 內有擴商務一條云, 與國上下全昧商務 關繫之何如, 現今築埠頭, 建稅關, 月期已屆, 而事變後措辦無方, 當願請其人而司基權, 然後可不失自主語等…, 中研, 上揭書, 10月 13日, 署北洋大臣 李鴻章 文稱, pp.1036~1037.

(10) …小邦何不 踏外務, 而各國 摧約左前, …切交涉商辦事件 茫然不知下手, …代聘賢明練達之工, 治茲束來, 隨事指導, …上同 趙將朝鮮國王咨文照抄, p.1038.

그리하여 11月 17日(陰 10月 7日) 李鴻章과의 再次筆談에서 領選使 金允植과 金明均을 帶同한 趙寧夏正使는 “敝邦에서 일할 洋人代表는 언제 派遣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李鴻章은 처음으로 일찍 天津駐在 獨逸領事館에서 勤務한 바 있는 펠렌도르프(Paaul Georg von möllendorff)임을 밝히면서 “卿들도 잘 알고 있는 人物이며 稅關과 各 方面의 交涉에 能하고 每事에 充實하며 貴國을 為하여 大端히 쓸모있는 사람이니 萬若 그 사람을 要한다면 周馥(天津稅關長) 馬建忠(李鴻章의 外交顧問) 兩人과 協議하여 合同雇傭契約書를 作成할 수 있다.”고 하여 高宗國王이 附託한 外務顧問이 바로 펠렌도르프임을 알려 주었다. 특히 李鴻章은 그가 일찍 天津 獨逸領事館에 勤務했고 和平忠實하여 中國 稅關에도 勤務하여 各國 言語文字에 眇고 交涉事에 能하여 特別히 推薦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sup>(11)</sup> 그리하여 다음날 11月 18日(陰 10月 8日) 趙寧夏正使와 펠렌도르프간에는 다음과 같은 6個條項의 内容으로 構成된 雇傭契約書에 署名하였다:

1. 펠렌도르프(穆麟德)는 朝鮮政府의 雇傭要請에 따라 朝鮮과 各國 交涉事件을 處理하되 반드시 誠意를 다해 處理하여 朝鮮官吏와 다를 바가 없다. 萬若 朝鮮政府가 國政을 訴問한다면 반드시 이에 應하여 改革을 要하는 部分은 펠렌도르프가 반드시 各國의 該當한 事實을 參考하여 現在 施行되고 있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의 長短點을 言혀 準備하여 詳細히 利弊를 報告하되 그以外의 일은 干與해서는 안된다.

2. 朝鮮國通商이 開始됨에 稅關을 設置하여 稅金을 徵收하고 碩泊船의 各種 章程이 아직 締結되지 않고 있어 펠렌도르프는 中國稅關에 勤務한 經驗이 數年이 되었으므로 틀림없이 外國各 稅關章程에 眇드므로 隨時로 이를 參考하여 잘 處理하며 朝鮮政府에 要議해서 施行한다. 萬若 朝鮮政府 및 中國委員이 朝鮮政府 일을 處理하는 사람을 도울려면 펠렌도르프를 開港地에 出張시켜 商務를 詳細히 보도록 하되 各項의 事務를 委任시켜 하나하나 處理하되 구실을 부쳐서 이를 拒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펠렌도르프가 朝鮮政府의 命令을 받는다면 稅關業務를 總括하거나 혹은 一個港口를 專擔管理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他港口를 兼任하면서 處理하되 반드시 朝鮮人을 補助員으로 使用하여야 한다. 萬若 初創期이므로 부득이 外國人을 雇傭할 때도 이미 雇傭된 外國人을 使用해서는 안되어 반드시 政府에 相議要請하며 雇傭年限을 明確히 約定하여 年限内에 반드시 朝鮮人으로 하여금 稅關業務를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期限이 차면 雇傭契約된 外國人은 辭退한다. 各 稅關에서 雇傭하는 外國人, 朝鮮人 및 倉庫를 補助하는 諸般事務는 반드시 빠짐없이 政府에 要請해서 그 可否를 要請하여確定을 받아야 하며 마음대로 處理해서는 안된다. 稅關에서 使用하는 公共費用 銀兩은 반드시 稅關收入에서 支出하나 처음에는 收稅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임시로 다른 資金을 調達한다. …稅關을 運營한지 2年 뒤 다시 月支出 公費項目을 定하여 施行하되 稅收한 銀兩은 隨時로 朝鮮官吏에 依해 政府에 보내도록 諒解하여 펠렌도르프는 오직 稅關業務만을 負審查하여決定한 뒤 報告한다. 萬若 朝鮮政府가 委派하거나 他項의 職務를 兼해 處理한다면 반드시 本協定書에 …라 參酌하여 處理해야 된다.

4. 朝鮮政府는 비록 펠렌도르프를 雇傭하여 일을 處理하도록 한 以上 반드시 理遇해야 한다. 萬若 職務로서 派遣한다면 반드시 일할 權限을 職責에 相應하도록 해 주어야 하며 僉給은 朝鮮政府가 1월 10日 每月稅關의 平銀 3百兩과 그의 住居地와 旅費等 모두는 朝鮮政府에 依해 公費內에서 負擔한다.

5. 朝鮮政府가 펠렌도르프를 招請한 것은 年限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며 萬若 二가 以上的各條項을 지키지 않는다면 細料는 물론 隨時로 辭退도록 하며 彼此 事務이 있어 辭退를 須한다면 반드시 3個月前에 相互通告하여 다른 사람이 代置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그런 然後에야 僉給을若干參酌하여 辭退시킬 수 있다.<sup>(12)</sup>

6. 上記 雇傭契約書는 英語와 中國語로 각각 만들어 趙寧夏正使와 李鴻章이 각一部 을 갖기로 合議하고一部는 갖고가서 朝鮮國王에 恭呈하여 批准을 받는다. 同 契約書가 署名된 뒤 11月 24日(陰 10月 14日) 李鴻章과 領選使 金允植間に 舉行된 筆談에서 李鴻章은 領選使에게 펠렌도르프의 交涉能力을 極讃하고 朝鮮政府가 그에게 몇 品의 官職을 주든 간에 그의 하는 일을 局外干涉하지 말도록 당부한 뒤 自身이 펠렌도르프를 特別히 推薦한 理由中 하나는 日本人이 獨逸을 가장 두려워 하기 때문에 日本을 牽制하고 그들의 横暴을

(11) 中研, 上揭書, 蘇將光緒八年十月初二日 與朝鮮大官 趙寧夏筆談節略, pp.1038~1041.

(12) 中研, 上揭書, 朝鮮政府延請前署, 天津德國領事官穆麟德, 議立合同各條, pp.1045~1046.

阻止하는데 있음을 強調하였다.<sup>(13)</sup>

그러나 비록 월렌도르프의 朝鮮 勤務目的이 朝鮮의 稅關設置에 따른 同業務을 管掌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번 趙寧夏正使와 金宏集副使가 李鴻章의 配應로 中國招商局과 開平礦務局으로부터 각각 參拾萬, 貳拾萬兩紋銀의 借款供與를 받고 同 五拾萬兩의 借款條件으로 朝鮮의 五金礦 採掘權과 關稅 및 人參權을 擔保物條로 償還하기로 約定한 바 있기 때문에,<sup>(14)</sup> 朝鮮의 金, 銀, 銅, 鐵의 開發과 더불어 李鴻章은 월렌도르프로 하여금 朝鮮의 外交와 商務를 直接 操縱하여 自身이 屬邦 政策遂行 代理者로서 役割을 해 주도록 渴望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15)</sup>

그리하여 월렌도르프는 趙寧夏正使一行을 따라 12月 10日 朝鮮國에 到着함에 따라 高宗政府는 12月 26日(陰 11月 16日)付 從前 機務處를 改編, 「總理衙門」이란 새로운 外務衙門의 官署機構를 設置하여 外國職務를 專擔케하고 趙寧夏와 金宏集을 각각 同機構의 辨理總理衙門職務(長官) 및 協辦(次官)으로 월렌도르프를 參職(局長)으로 각각任命하였다.<sup>(16)</sup>

#### IV. 「월렌도르프」의 引薦構想과 外交活動

월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는 1847年 2月 17日 獨逸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육카마르케(Uckermark)에 있는 제데니크(Zedenick)에서 出生하여 할레(Halle)大學에서 法哲學과 東洋言語學을 專攻한 바 있으며 1871年 中國海關에 勤務하기 前 北獨逸關稅同盟에 勤務한 바 있다. 그는 中國海關에서 1874년까지 4年間 勤務하다 끝 駐天津獨逸領事館에서 通譯官으로 履備되었다. 一時 天津駐在 領事代理職까지 지냈던 바 그의 上司인 駐北京獨逸公使 브란트(M. von Brandt)와의 不和關係로 1881年 辭職한 뒤 李鴻章의 幕僚內數名의 外國 屬僑人 中의 한 사람으로 勤務하고 있던 중 李鴻章의 推薦으로 朝鮮에 赴任하게 되었다.<sup>(17)</sup>

그러나 월렌도르프는 李鴻章이 趙寧夏正使나 領選使 金允植에게 그의 能力과 人品을 檢讚한 것과는 달리 그의 高度의 外交的 내지는 行政的 資質을 타고 났기보다 오직 自己自身의 獨自의 役割을 擔當해 나가길 热望하는 그런 類의 사람이었다.<sup>(18)</sup> 그가 未知의 나라 朝鮮에 전너오기 前 그나름대로 遠大한 計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駐天津英選使 브리난(Brenan)에게 自己는 무엇보다도 朝鮮의 鐵山開發, 製造業 및 다른 工業化事業을 일으키기 為하여 朝鮮의 資源을 開發하여 보고 또한 이러한 事業計劃을 成功시키기 為해서는 中國보다 英國의 支援을 期待하며, 可能하다면 英國의 資本家들이 朝鮮에 投資해 주길 바란다고 實吐한 事實로써 알 수 있다.<sup>(19)</sup> 이 중에서 그가 가장 關心을 가졌던 것은 朝鮮의 鐵山開發였고 또한 이러한 그의 意中은 그가 趙正使와 罷俸契約書를 締結하기 前 領選使 金允植과의 筆談에서 “朝鮮鐵山에 대하여 事前 研究 檢討하고 싶다고 “前提한 뒤”深山의 煤礦處는 金, 銀, 銅, 鐵의 鐵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를 開發해야 된다고”<sup>(20)</sup> 力說한 것으로도 理解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朝鮮 鐵山開發에 對한 關心을 갖고 赴任한 월렌도르프가 外務衙門의 參議로 任命된지 불과 보름만에 高宗政府는 1883年 1月 12日(陰 12月 4日)付 外務衙門을 總理交涉 通商事務衙門으로 改稱하고 다음 날 월렌도르프를 協辦(次官)으로 升進시키 同 機構의 權知 協辦事務에 任命된 閔泳翊과 함께 天津으로 派遣됨으로써<sup>(21)</sup> 월렌도르프의 外交活動은 始作되었다. 이들의 天津訪問 目的是 이미 言及한 바 唐挺樞一行이

(13) 金允植, 陰晴史, 國事編纂委員會, 1958. 9, pp.206.

(14) 中研, 前揭書, 光緒 8年 8月 25日「收北洋大臣文一件, 朝鮮向我國款五十萬由招商礦務兩局商訂借銀合同各節」, pp.968 ~970.

(15) 朴日根, 前揭論文, pp.355~357.

(16) 朴日根, “穆麟德與韓國傳統社會”, 월렌도르프(P.G. von Möllendorff)(서울: 正民社, 1983), p.129.

(17) 高炳翹, “穆麟德의 罷聘背景”, 上揭書, pp.98~100.

(18) The Executive Documents of the Foreign Relation of United States, China, No. 142, Young to Frelinghusen, Peking, March 20th, 1883.

(19) Park IL-Keon, ed.,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Shinmundang, 1982, pp.117~118. No. 140, Most Confidential. Mr. Grosvenor to Earl Granville, Peking, November 25, 1882.

(20) 金允植, 前揭書, pp.172~176.

(21) 高炳翹, 前揭論文, pp.105~106.

調査한 朝鮮의 鎮山現場 踏查結果가 매우 滿足한 것으로 判明되었기 때문에 去年 10月 10日(陰 8月 20日) 趙寧夏正使와 唐梃樞間에 署名한 借款協定에 따라 五拾萬兩紋銀을 受領하는데 있었다.<sup>(22)</sup>

이와 같이 월렌도르프는 朝鮮의 資源을 開發하여 商工業을 發展시키려는 經濟的 方面의 關心以外에도 그는 처음부터 李鴻章의 期待하는 달리 露國이 朝鮮國境과 불과 5마일 거리에隣接해 있고 또한 朝鮮北境地域居住民들이 數十年前부터 越境하여 中國領土에 進入하여 定着하고 있음에도 이들 難民들은 露國의 保護下에 있는 것처럼 行動하여 露國이 同 地域에 대한 権利와 保護를 實現하기를 希望하고 있는 事實을 重視하고, 露國을 包含한 이른바 英國保護策(Scheme of a Joint Guarantee)을 構想<sup>(23)</sup>하면서 이러한 保護策만이 韓半島의 安全을 圖謀할 수 있고, 또한 中·日兩勢力의 衝突을 避할 수 있는 方策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政治的, 經濟的, 改革構想을 가진 월렌도르프의 起任은 確實히 壬午軍亂後 前例 없이 強化된 軍事分野에서 中國의 影響力を 政治, 外交 및 經濟方面에 까지 크게 增大시켜주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高宗國王은 1883年 5月 初代 美公使 푸드(Cucius H. Foote)가 來朝하여 貴國政府는 朝鮮王國을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看做할 것이라는 基本外交政策을 闡明함에 따라 急激히 膨脹한 中國의 干涉政策을 奉制하는 同時に 美國을 乘어들여 國內政治에 势力均衡策을 維持하면서 先進美國의 制度와 科學技術習得을 通해近代化政策을 推進하기 為하여 同年 7月 開化黨으로 構成된 「訪美使節團」을 派遣하였으니 이것이 곧 「高宗國王」의 「依美脫華策」이었다.<sup>(24)</sup> 그러나 美國과는 달리 居中斡旋으로 朝鮮과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한 英國은 全權代表 윌스(George O. Willes)提督이 1882年 6月 朝鮮代表와 締結한 朝·英條約內容이 첫째, 極東에서 英國의 政治的 商業的 地位에 影響을 줄 만큼 不利하고 둘째, 美國의 경우처럼 大英帝國의統治者와 中國 屬邦國王과 어떻게 同等하게 待遇하며 셋째, 規定한 關稅와 船舶噸數稅가 너무 高게 책정되었다는 理由 등으로 批准을 拒否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을 探知하지 못한 채 壬午軍亂後 開化黨으로 構成된 謝罪團이 訪日하는期間 朴泳孝와 金玉均等은 駐東京英公使 파크스(Sir H. Parkes)와 接觸을 갖고 英國이 早速히 第1次條約을 批准해 주도록 促求하였다.<sup>(25)</sup> 그러나 파크스公使는 朝·淸水陸貿易章程과 朝·英條約을 比較할 때 朝·英條約이 基本不利한 뿐만 아니라 또한 中·日各開港地內에서 自國商會議所會員들이 極力 同條約의 批准을 反對하고 있기 때문에 第1次條約을 修正하자는 것이었다.<sup>(26)</sup>

當時 英國이 極東外交政策은 露國의 膨脹政策을 阻止하는 反面, 中·日兩國에서의 貿易을 保護하는데 그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中國은 朝鮮이 그들 屬國이라고 하나 中·日이 事實上 朝鮮을 露國의 侵略으로부터 救濟할 만한 能力이 없고 오히려 中國이 自國領土의 保全을 為해 朝鮮을 犠牲시킬 수 있다고 判斷하여 英國은 어떤 名目으로든 간에 露國이 朝鮮에서 直接 影響力を行使하거나 確立하는 것을 뜻하는 「朝·露條約締結」 같은 것은 容認하지 않겠다는 것이 곧 英國의 基本外交路線이었다.<sup>(2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務協辦 월렌도르프는 이미 파크스公使와 開化黨의 協力으로 1883年 11月 26日 朝鮮代表와 英獨兩國의 全權代表間に 이른바 第2次通商條約을 締結한 以後<sup>(28)</sup> 그는 駐北京 露·佛兩公使에게 각각 便紙를 내어 兩國이 朝鮮과 條約締結을 希望한다면自己가 直接 協力하겠다는 要旨의 居中斡旋을 自請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朝·露兩國間의 關係改善은 美國을 비롯한 中·日兩國마저 결코 默過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李鴻章으로서는 파크스公使가 北京에 轉任되기 前부터 이른바 第2次朝·英條約을 協議하기 為해 開化黨指導人士들과 東京에서 接觸을 가진데다가 이들 指導者들이 追求하는 「脫華策」에 便乘하여 自國의 利益을 為해서 中國의 宗主權마저 否認하는 것과 같이 事前 中國과 協議도 없이 直接 第2次朝

(22) 朴日根, 前揭論文, pp.343~365 參照。

(23) Park Il-Keun, ed., op. cit., No. 141. Most Confidential, Mr. Grosvenor to Earl Granville, Peking, November 25, 1982, pp.118~119.

(24) 朴日根, 近代韓美外交史, (서울:博友社, 1968), pp.360~364.

(25) 朴日根, “初期英國의 對朝外交政策研究”—李鴻章의 屬邦政策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中國問題 研究所, 論文選, 第10號, pp.1~29, 參照。

(26) Jones, F.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Department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1935, pp.346~348.

(27) Jones, Ibid., pp.354~356.

(28) Park, ed., op. cit., No. 38, Parkes to Granville, Seoul, November 7th, 1883.

英條約을 協商하여 結果의 으로 國王의 外交顧問으로 實權을 가진 월렌도르프가 李鴻章의 屬邦政策에 逆行하는 行動을 저지른 바 있는데다가 그가 平素 警戒하는 鑄國協力마저 끌어 들였기 때문에 그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sup>(29)</sup> 이러한 미묘한 關係는 既述한 朝英·朝獨兩條約이 締結된直後인 12月 12日字 월렌도르프는自身의 日記에서 “中國이 宗主權을 갖고 問題를 일으킬 것이라고”<sup>(30)</sup> 적어 自己의 難處한立場을 實吐하였다.

이와 같이 월렌도르프가 李鴻章의 對朝政策에 違背되는 外交活動을 展開한 것 以外에도自身이 備給을 받고 있는 朝鮮의 利益보다 오히려 第3國의 國益을 為해 事務를 處理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로서 알 수 있다. 即 그는 駐朝日本公使「竹添」와 朝·日通商稅則章程을 規定할 때도 同 第3條內 收稅는 銀貨로 規定하여 야만 朝鮮의 利益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일본人으로 하여금 朝鮮銅錢을 納入하도록 한 것과 差別待遇을 함으로서 美公使와 不和를 自招하기도 하였다.<sup>(31)</sup>

더우기當時 朝鮮財政事情으로는 鑄造機器購入費, 運搬費, 外國技術者招聘, 建築費, 外國人技術者와 内國工人의 月給等 最少 「鑄銀工場」을 建設하고 運營하는데 5萬餘圓의 經費가 消費되는 「鑄銀錢策」을 推進하기 어려운 實情<sup>(32)</sup>임에도 불구하고 월렌도르프는 1884年 3月 典圖局總辦이 된 것을 奇貨로 開化黨의 反對와 美國公使의 忠告를 無視하고 每年 鑄造一百萬元을 鑄造할 경우 단지 利益이十三萬元에 불과한 이 遠大한 事業을 커다란 財政的 損失을 감수하면서까지<sup>(33)</sup> 獨商 世昌洋行(H.C. Edward Meyer & Co.)을 通해 獨逸로부터 鑄錢器械을 導入하여<sup>(34)</sup> 그가 利權에 關與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884年 1月 5日付 高宗國王이 美公使「푸트」에게 洋銃 三千자루를 부탁한 以降 同年 5月 31日付 訪美使節團 正使「閔泳翊」과 함께 來朝하여 美公使 武官으로 勤務하게 된 푸우크(George C. Foulk)가 美國貿易公司(American Trading Company)를 通해 Rifle 銃 4,000정과 Gatling砲 6문 및 75,000발의 탄약등을 一萬六千弗로서 朝鮮政府를 대신해 購入해 준 것을, 월렌도르프는 Gatling砲 一門에 七千弗씩 計算하여 六門에 4萬2千弗씩 購入하고자 注文하는 等<sup>(35)</sup> 利權에 깊이 介入하고 때로는 엄청난 虛偽價格을 붙여 不當利益을 取하려는 態度마저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월렌도르프가 稅關業務를 管理하고 있는 期間中 同 稅關行政에 關聯된 問題나 稅關收入金에 대하여 全혀 言及하지 않아 高宗政府는 稅關業務가 開始된 以來 業務報告라든지 2年間 한푼의收入金도 받지 못하여 實事上 稅關業務은 完全히 「治外法權」地帶였다.

비록 이때 稅關業務는 政府의 補助金이 없이도 能히 自立 達行될 수 있었고當時各國으로부터 輸出入에 따른 關稅만 하더라도 年間 약 45,000弗 程度剩餘收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렌도르프는 약 2年間 朝鮮政府에收入金의 한푼마저도 내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2年間收入金도 發表하지 않았기 때문에 政府가 1884年 7月 월렌도르프의 業務를 監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監查가 始作되었을 때 公교롭게도 濟物浦(仁川)稅關에 大火災가 일어나 이에 관련된 모든 統計業務資料가 消失됨으로써<sup>(36)</sup> 結局 仁川稅關收入金을 둘러싼 월렌도르프의 不正橫領金額이 어느 程度 規模였는지를 紛明하지 못한 채 迷宮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월렌도르프의 業務處理가 自己個人의 利益의 動機에서만 取한 否定的側面이 比較的 많았지만 그反面 그가 朝鮮의近代化에 기친肯定的側面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武器製造를 '為한 機器局을 設立하고 稅關業務와 外務를 瞥을 通譯員養成을 為해 「英語學校」를 세워 英國人教師 할리파스(Thomas. E. Hallifax)를 教師로 삼았으나 同學校도 그가 官職을 辭任하고 할리파스가 離朝함에 따라 門을 닫고 말았다. 그以外 1884年 1月 그는 上海로부터 獨逸人技術者 매르텐스(Maertens)를 招聘하여 「養蠶事業」을

(29) 朴日根, “初期英國의 對朝外交政策研究”, 前揭論文, pp.1~29 參照

(30) 월렌도르프의 日記 Letter No. 448 of December 2, 1883.

(31) 尹致昊日記, 高宗 20年, 1883. 2月 21日 參照.

(32) 上同, 高宗 21年, 1884. 1月 17日, 3月 18日, 3月 20日 參照.

(33) 上同, 高宗 21年, 1884. 3月 18日.

(34) 高炳熙, 前揭論文, p.107.

(35) Park, ed.,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No. 224, Mr. Foulk to Mr. Bayard. 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Seoul, Korea, September 2, 1885, p.1008.

(36) Ibid., No. 239. Same to Same, October 14, 1885.

일으키고자 数千弗의 資金을 投資했지만 同事業도 結實을 거두지 못하고 失敗했으며 正是 煙草栽培를 擴張해 보려고 日本에서 獨逸人技士 크니플러(Kniffler)를 대리고 와서 그 可能性을 打診시켰다가着手하기 前에 抛棄한 적도 있었다. 특히 그가 外交顧問職을 辞任한 後 1883年 8月 獨逸系美國人 르센바움(Rasenbaum)技士를 招請하여 漢江의 土砂에서 硝子를 製造할 計劃를 세웠으나 그 土砂質이 製品生產에 適當하지 않음을 일고 이를 變更시켜 성냥製造工場을 세워 이를 生產하되 財政的 窮乏으로 失敗하고 단적도 있다.<sup>(37)</sup> 또한 그의 在職期間中인 1884年 5月 그는 中國商務總辦 陳樹棠과 協定을 맺어 中國怡和公司 所屬船舶이 上海와 仁川間에 來往하도록 하는 定期航路를 開通시키는 等 그가 朝鮮의 經濟, 工業化, 教育 및 交通振興政策에 이바지하는 點도 적지 않았다.<sup>(38)</sup>

## V. 韓·露密約說과 윌렌도르프의 辞任

윌렌도르프가 外務協辦, 稅關의 總稅務司, 典圖局의 總辦 및 工曹參判(1884. 4. 24~6. 13)職까지 兼任하여 莫強한 權限을行使하던 期間中 그가 開化黨 指導者들과 政治, 外交, 軍事, 經濟 및 社會化等各 分野에 걸쳐 政府의 政策과 施策을 둘러싸고 對立과 葛藤을 일으켰던 것은 익히 알려진 事實이다.

특히 中國의 對朝 屬邦政策이 強化되는 時點에서 執權事大黨은 開化黨이 朝鮮王國을 主權國家로 認定한 日, 美等諸國의 資本導入과 科學技術 等의 習得을 通해 多邊外交를 展開하면서 國政을 改革하고 開化政策을 推進하면서 國家의 近代화와 民族自主國家를 建設하려면 時代의 要請마저 外面하고 政權維持에만 過汲하여 朝鮮이 中國의 屬國인 양 默認하여 오직 「親華策」에만 依存하여 漸進的 改革만을 求하였기 때문에 開化事大黨과의 政治的 鬭爭은 不可避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開化指導者들은 無政見한 事大黨이 長期 執權하여 오히려 反開化政策을 態行하는 限 그들의 政治的 理念을 實現시킬 수 없다는 切迫感에서 第3勢力を 利用한 政權奪取를 計劃하였으나 이것이 곧 1884年 12月 4日 開化黨이 主導한 「甲申政變」인 것이다.<sup>(39)</sup>

同 政變發生時 윌렌도르프는 現場에서 刺客에 依해 負傷당한 閔泳翊을 自己집에 옮겨 Allen의 도움으로 生命을 救助 주었으나<sup>(40)</sup> 同政變이 袁世凱의 一方의 武力介入政策으로 3日만에 失敗하여 開化黨 指導者들은 日公使 竹添을 떠나 日本으로 亡命하게 되자 그는 即却 外務協辦의 身分으로 仁川에 가서 竹添公使에게 金玉均, 朴泳孝 等의 引導를 要求하였으나 失敗하였다.<sup>(41)</sup>

中·日兩軍은 同 政變의 真相을 穗취하고 事後對策을 討議하기 위해 來朝한 日本外務卿 井上와 함께 12月 29日 入京한 駐日露國參事 스페이어(A. Speyer)는 中·日 兩國의 紛爭이 어떻게 處理될 것인가를 觀察하고자 서둘러 머무는 期間 趙秉鎬督辦과 兵曹判書를 兼職한 윌렌도르프와 接觸을 갖고 中·日이 開戰한다면 朝鮮의 中立을 維持할 方法에 대하여 相互意見을 交換하였다. 이때 Speyer는 露國은 朝鮮에서 中·日兩國의 開戰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만약 不幸한 일이 있으면 모든 方法으로 保護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sup>(42)</sup> 그러나 高宗政府가 1885年 1月 9日(陰 11月 24日) 井上全權大使와 漢城條約를 締結함에 따라 中·日間의 開戰危機는 일단 謀免할 수 있었고 또한 政府는 同 條約의 1條에 따라 2月 5日(陰 12月 21日) 徐相雨와 윌렌도르프를 각각 全權大使와 副大使로任命하여 日本으로 派遣하였다. 이때 윌렌도르프의 使命은 政府를 代身해서 日本에 謝意를 表明하고 또한 金玉均, 朴泳孝 等의 逮捕 送還을 爲해 日本政府와 再交涉을 試圖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 2個月間 滯日期間中 極秘이 駐日露國公使 데이비드우(Davydow)와 텁번히 接觸을 갖고 “露國이 朝鮮을 保護 保障해주는 代價로 朝鮮은 그들이 좋아하는 어느 島嶼를 讓渡할 것이라고 하여” 具體的으로 協定을 提議하였다.<sup>(43)</sup> 더우기 그는 渡日前 兵曹參判職(1884. 12. 15~1885. 2. 6)

(37) 李泰列, “Wilendorff와 韓末開化期의 行政改革”, (首爾: 正民社, 1983), pp. 155~168.

(38) 高柄羽, 前揭論文, pp. 93~109.

(39) 朴日煥, “甲申政變의 再評價”, 前揭論文, pp. 193~227.

(40) 尹致昊, 前揭書, 高宗 21年, 1884. 12月 5日 參照.

(41) 李道根, “韓國史”(最近世編), (首爾: 乙酉文化社, 1961), pp. 656~670.

(42) Park, *cit.*, op. cit., No. 195. Very Confidential, O'conor to Granville, Peking, April 27th, 1885.

(43) Reid., N. 12, Mr. G.C. Foulk to Mr. Bayard, July 5, 1885.

을 辞任했고 高宗國王이 이미 美公館의 훌크武官을 通해 美軍顧問을 依賴한 事實마저 알고 있는 處地임에도 불구하고 露公使에게 朝鮮軍隊를 訓練시킬 露國敎官의 派遣을 要請하면서 그 代價로 露國이 바라는 不凍港, 永興灣(Port Lazareff灣)을 租賃해 주겠다는 意思를 提出했다. 이러한 提議를 받은 露公使은 朝鮮政府의 方針으로 알고 이를 快히 受諾하였다.<sup>(44)</sup>

비록 월렌도르프의 「引露策」에 依한 保護策은 그가 赴任하기 前構想했던 政治的 解決策에 不過했을지라도 이러한 引露策을 具體化시킨 뒷면에는 自身이 直接 申甲政變을 契機로 體驗한 中·日兩國의 武力衝突은 再發되어서는 안되고 그러기 為해서는 兩國을 牽制할 수 있는 第3勢力이 必要하다는 認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의 引露保護策이 朝鮮의 自主獨立과 極東의 平和와 安全을 為해 現實的인 方策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代案은 中·日兩國을 包含한 大英帝國이 現實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파 英國은 露國과 아프칸(Afghan)國境問題로 公然히 敵對關係에 있었고 더우기 同年 1月 31일부터 露國이 머버(Merv)地域을 占領하여 同地域에서 兩國間의 開戰이 緊迫한 것 같은 狀況下에 있었고 또한 中國도 露國과 國境紛爭에 휘말리고 있는데다 安南에서 佛蘭西와 戰爭中에 있었기 때문에<sup>(45)</sup> 中國은 可能한限 英國에 友好的인 態度를 보여야 할 處地에 있었다. 더우기 日本도 露國이 太平洋에서 不凍港을 獲得하고자 日本領土의 一部를 占領할 것을 念慮하여 佛蘭西와 同盟을 考慮하고 있었기 때문에 朝鮮에서 中·日兩國間의 敵對關係는 危機로 물고 걸 緊迫한 狀況을 造成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 日本政府는 伊藤博文을 全權大使로 任命하여 朝鮮에서 中·日兩軍의 撤收問題를 解決하도록 하기 為해 天津派遣를 發表함에 따라 월렌도르프는 中·日兩軍이 서울撤收를豫想하면서 萬若 朝鮮軍 2千名을 訓練시킬 數名의 外人敎官만 있다면 朝鮮은 完全히 秩序를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露公使에게 敎官派遣를 要請하였다.<sup>(46)</sup>

그리하여 徐相雨, 월렌도르프代表는 3月 21일 日本政府로부터 金玉均 等의 送選目的을 實現하지 못한 채 東京을 떠나 歸國하자 월렌도르프도 곧 國王高宗에게 中·日兩國勢力を 遣出하기 為해서는 露國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建議를 하였으나 國王은 그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7)</sup>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李鴻章과 伊藤博文의 兩國代表는 天津에서 會談을 舉行하여 事後對策을 協議하던 중 兩人의 會談이 決裂되어 開戰의 危機마저 빚지 않다는 風聞이 流布됨에 따라 高宗政府는 월렌도르프의 劝誘로 秘密히 權東壽, 金鏞元等을 브라디보스톡(Vladivostock)地方에 보내어 露政府에 保護를 要請하는 國王親書를 傳達한 뒤 이들 密使는 同地方官의 回書를 携帶하고 돌아와서 國王에게 提呈하였다.<sup>(48)</sup> 어쨌든 이러한 狀況下에 中·日兩國이 4月 18日 天津條約를 調印하기 이틀 前인 4月 16日 本國政府의 命令을 받은 英艦 三隻이 巨文島를 強點하는 事件이 發生하였다. 그러나 高宗政府는 4月 26日付 駐北京公使 오코너(Nicholas R. O'Conor)로부터 이에 대한 事實을 通告받은데 이어 5月 10日付 丁汝昌提督이 傳達한 李鴻章의 親書를 받고서야 비로서 事態의 重大性을 悅知하였다.<sup>(49)</sup>

그리하여 政府는 丁提督 艦艇便에 嚴世永과 外務協辦 월렌도르프를 現場에 派遣함에 따라 嚴世永과 월렌도르프兩代表는 5月 16日 巨文島에 到着하여 英艦 飛魚號(Flying-Fish)의 맥크리어(Maclear)船長에게 英旗掲揚을 抗議하였지만 同船長은 그들의 行動은 오직 本國政府의 命令에 따라 露國을 牽制하고자 同島를 占領했을 뿐이라 啓辯하고 모든 責任을 長崎駐在 도웰(W. Dowell) 提督에게 轉嫁시켰다.<sup>(50)</sup> 이리하여 嚴一行은 長崎에 가서 도웰(W. Dowell) 提督에게 抗議하고 巨文島占領과 英旗掲揚責任을 追窮하면서 5月 19日 이에 對한 朝鮮側의 抗議書翰을 傳達하는 同時에 이에 이들 代表는 日·露代表들에게도 同抗議書를 傳

(44) Ibid.

(45) Elizabeth Thomson, "British Attitudes to the Career of Paul-Georg von Möllendorff," (서울: 正民社, 1983), pp. 333~355.

(46) 中研, 前揭書, 第四卷, 6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稿, pp. 1866~1870.

(47) 上同.

(48) 上同, 六月二十九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稿, pp. 1894~1895.

(49) 朴日根, "李鴻章의 對朝政策"一英艦의 巨文島事件을 中心으로, 益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1982. 9. 論文選 第8號, pp. 1~4.

(50) Park, ed., op. cit., Secret. Inclosure 2 in No. 87, Captain Maclear to Vice-Admiral Sir W. Dowell, "Flying Fish," at Port Hamilton, May 16, 1885.

達한 後 도웰(W. Dowell)提督의 回信을 갖고 歸國하였다.<sup>(51)</sup>

特히 英의 巨文島占領을 抗議하는 過程에서 월렌도르프協辦이 英의 利益에 反하는 行動을 取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은 오코너(O'Conor)公使는 월렌도르프가 日本滯留時 露公館을 通해 露政府에 巨文島買入을 提議 했다고 하여 敵對人物로 斷定하게 되었다.<sup>(52)</sup> 또한 그가 朝鮮統理衙門으로 하여금 5月 20日付 英總領事 代理 카아레스(Carles)에게 巨文島占據가 公法上 違反되고 또한 朝鮮에 繫要하므로 借用할 수 없다고 抗議토록 하는 反面에 朝·英條約 第1款의 規定에 따라 駐京獨逸總領事, 美公館, 日本公館 等에 同 抗議書內容을 傳達하여 駐在外交使節團의 干涉을 招致하고자 한 張本人 이라는 事實에 基因하였다.<sup>(53)</sup>

朝鮮政府가 英艦의 巨文島 占領을 抗議하는期間에 英 오코너(O'Conor)公使는 外務協辦 월렌도르프가 敵對의인 人物임을 斷定하였다. 왜냐하면 월렌도르프가 日本 체류시에 露公使와 接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朝鮮政府를 대변해서 駐朝英國代理總領事 카아레스(Carles)에게 英國의 巨文島占領에 대한 不法性을 抗議하고 또한 朝·英條約 第1款에 따라 同 巨文島가 朝鮮에 對하여 重要하므로 英國에 租借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美國·日本 및 獨逸公館이다 朝鮮政府의 抗議書를 傳達하여 각國外交使節團의 干涉을 惹起시켰기 때문이었다.<sup>(54)</sup>

그리하여 오코너(O'Conor) 公使가 월렌도르프(Möllendorff)는 反英感情으로 英의 巨文島 占領을 反對하고 있어 李鴻章의 미움을 사서 解任될 것이라고 報告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월렌도르프의 辞任을 事前豫告한 것은 월렌도르프가 6月 2日 駐京英總領事代理 카아레스(Carles)에게 朝鮮政府는 매드슨(Messus Jardine, Matheson & Co.) 會社에 讓渡한 鎮山開發權을 延長하지 않겠다고 위험한 것이 禍根이 되었고 또한 월렌도르프가 巨文島問題를 國際化하려는 背後人物이라는 基因하였다.<sup>(55)</sup>

한편 6月 9日(陰 4月 27日)付 駐 日露國公館 스파이어參事는 일찍 월렌도르프가 要請한 露國 軍事敎官 派遣 與否를 打診하고자 直接 來朝하였다. 그는 到着 後 월렌도르프를 通하여 謁見을 要請하다 失敗하자 6月 20日(陰 5月 8日) 外務衙門督辦 金允植을 訪問하고 長時間의 會談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스파이어는 “지난번 徐相雨 월렌도르프兩使가 日本 露國公使館에 와서 하는 말이 中·日은 撤兵할 것이며 我大君主는 貴國으로 부터 敎官을 招請하여 朝鮮의 軍隊를 訓練한 뜻을 傳하였다”고 露國敎官 派遣의 前後 真相을 이 야기하였다. 이에 金允植은 “이러한 公文이 있었는가?”를 물음에 스파이어는 “월렌도르프가 구차 이리한 뜻을 傳하여 내가 그에게 이야기한 바대로 我國政府에 打電하여 我大皇帝에 傳達하게 되었다”고 說明하였다. 이에 金允植은 “그때는 天津條約이 있기 前印地 어찌하여 撤兵을 미리 알 수 있는가?”라고 反問함에 스파이어는 “日本에서는 이미 이러한 論議가 諸般新聞에 發表되어 이 事實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金允植은 “日本이 비록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朝鮮은 알지 못하였으며, 월렌도르프가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本衙門은 들지 못하였고, 또한 國王으로부터 그러한 命令을 받은 바도 없으며 全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하여 월렌도르프가 要請한 敎官派遣는 事實上 朝鮮政府와 何等關係가 없음을 力說하였다.

이에 스파이어는 “월렌도르프參判이 巨文島事件으로 日本 長崎에 들렀을 때 本國政府는 「朝鮮政府가 만약 我國敎官을 採用한다면 곧 派遣하겠다고 打電하여 왔다」고 解明함에 金允植은 “그것 또한 듣지 못하였고 월렌도르프參判은 비록 同僚로서 서로 좋은 사이이나 이 일을 秘密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에게 說明할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나 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스파이어는 “本人은 大皇帝의 命을 받고 友誼를增進하고자 왔기에 全的으로 貴國을 保護하고자 하는 뜻이며 먼저 월렌도르프參判과 相論하여 洋文으로 그 뜻을 記述하여 월렌도르프에게 주었고 그는 이를 漢文으로 翻譯하여 貴政府 重臣會議에 上奏하여 政府 諸大臣들과 大君主와 檢討할 것이라고 했는데 貴督辦이 同 翻譯文을 가지고 中國公館에 가서 事前에 그들과

(51) Ibid., Inclosure 4in No. 87, Vice-Admiral Sir W. Dowell to MM. Om Si-Yong and Von Möllendorff, “Audacious,” at Nagasaki, May 19, 1885.

(52) Ibid., No. 235, Very Confidential, Mr. O'conor to Earl Granville, Peking, May 20, 1885.

(53) Ibid., Translation Inclosure 2in No. 106, The President of the Corean Foreign Office to the Acting Consul-General Carles, Foreign Office, Corea, May 20, 1885.

(54) 朴日根, 前揭書, pp.5~11.

(55) Park, ed., op. cit., Inclosure I in No. 152, Confidential, Vice-Consul Carles to Mr. O'conor, Hanyang, June 2, 1885.

相議한 事實을 알고 있다”라고 反駁하였다.

그러나 金允植은 “이 일을 公明正大히 公聽하여야 한다는 理由로 中國公館에 公開한 事實만을 是認할 뿐 朝鮮은 일찌기 美國에 教官을 要請한 일이 있다”라고 하여 再三 拒絕하였다. 이에 스파이어는 “貴國이 美國教官”을 要請한 지 數個月이 지났으나 아직 到着하지 않고 있다. 美國은 君主가 없어 반드시 國會에서 決定하기 때문에 今日부터 7,8個月 後에 要請해야 到着할 수 있으니 이것은 늦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美國政府의 議會制度로 因하여 同 問題의 節次에 多少 時間이 必要함을 說明하였다.

그러나 金允植은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미 國王께서 美國公使를 만나 이야기한 일이므로 지금에와서 謝絕하여 이를 中止하기는 困難하다”는 態度를 取함에 그는 다음과 같은 妥協案을 내놓았다. “그것은 하기가 어렵지 않다. 即 貴國이 露國教官을 꼭 招請하고자 願한다면 美國에 먼저 招請한 것을 中止하겠다는 事實을 我國政府가 美國에 通知하면 自然히 아무 일도 없고 또한 兩國의 友誼關係에 害로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金允植은 “貴國에 教官을 要請한 것은 臣下들의 私見이요, 美國에 要請한 것은 國王께서 親히命하신 것이어서 根本의으로 輕重과 先後가 다르므로 받아들이기 困難하다”라고 說明하였다.

그러나 스파이어는一步의 양보도 없이 “美國은 가장 멀리 있어 그들의 力勢은 貴國에 有益할 수 없는데 貴國은 어찌하여 美國에는 厚하고 우리에게는 冷待하는가?”라고 말하였으나, 金允植은 “遠近之勢力임은 原來 알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은 가장 먼저 修好하였기 때문에 關係가 깊고 그래서 教官招請도 먼저 相議하였으며 또한 國力이 弱한 國家가 信義를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自主할 수 있겠는가?”라고 反問하면서 끝까지 初志一貫으로 對美依存策을 堅持함에 스파이어도 또한 이에 지지 않고 始終自己는 韓國即時 朝鮮이 取한 美國厚待에 따른 露國冷待策의 真相을 我國皇帝 및 政府에 進言할 것이며, 또한 貴國과는 外交關係도 갖지 않을 것이고, 露國公使派遣도 없을 것이며 以後 반드시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等 外交關係의 斷絕마저 不解하겠다<sup>(56)</sup>는 威脅的인 態度를 取하였던 것이다.

이에 스파이어는 6月 24日 外務督辦 金允植을 訪問하고 일찌기 월렌도르프가 要請한 露國軍事教官의 派遣問題를 再論하였다. 이 자리에서 金允植은 스파이어에게 “이 일로 困難을 招來하기는 쉽다고前提하고 政府는 일찌기 美國教官을 要請한 바 있었기에 國王께서 衛門과妥協하라는 뜻을 曲解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스파이어는 “만약 露國을 冷待하고 美國을 厚待하면 반드시 좋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威脅한 後 貴國은 兩國中 어느 나라와妥協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金允植은 “貴國과 美國兩國은 모두 同盟國인데 어찌 親疎의 分離가 있겠는가? 그러나 美國에 이미 要請한 것은 明白히 公文이 있으나 貴官이 이곳에 온것은 처음부터 公文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은 談判도 私談이니 이것으로는 困難하다고 하여 스파이어의 要請을 公文이 없다는 理由로 拒絕하였다. 이에 스파이어는 “비록 美國은 公文이 있다지만 아직 회답이 없지 않은가?”라고 월렌도르프와의 密約의 真否를 따졌다. 이에 金允植은 對答하기를 “美國은 비록 公文의 回答은 없으나 美公使館이 本署(外務衙門)에 이미 通知한 回輸이 있음을 貴下는 아직 信賴하지 않고 있다. 월렌도르프가 貴下와 密約했다는 말은 헛된 이야기에 不過할 뿐이다. 어제 월렌도르프를 만나 물었던 바 自己의 이야기는 國王의 命令에 依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自己가 만들어 이야기한 것에 不過한 뿐이다”라고 云云하였다”라고 하면서 露國教官의 派遣要請은 순전히 월렌도르프의 單獨交涉임을 解明하였다. 이에 화가 난 스파이어는 “貴國은 親美를 願하느냐, 혹은 親露를 願하느냐? 한 마디로 決定하여 教官問題를 明白히 듣고 싶다”고 威脅함에 金允植은 “鍊兵教官은 本人이 먼저 美國에 要請한 以上 이제와서 謝絕하여 그만 두기는 더욱 困難하다. 貴國이 만약 我國의 利益이 되는 일을 드고자 한다면 鍊兵以外 어찌 다른 일은 없겠는가?”라고 反問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一言半句도 없이 스파이어는 “美國에는 冷待하여도 害로을 것이 없으나 露國에 冷待하면 반드시 目前에禍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始終 威脅하였다. 이에 難處에 진 金允植은 “露國人의 採礦技術者派遣을 提議했으나 스파이어는 鍊兵一事를 除外한 어떠한 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sup>(57)</sup>고 拒絕하였다.

이와 같이 露國教官 招聘問題를 둘러싸고 金允植과 스파이어 間에 異見을 露出하였으나, 결국妥協點을 發

(56) 朴日根, 前揭書, pp. 383~387.

(57) 上同, pp. 380~383.

見하자 英艦에 소파이어는 7月 7日 歸國하였으니 이것이 第1次 朝露密約說의 真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金允植과 아스頓(Aston)領事間に 7月 4日 있었던 會談에서 아스톤이 金允植에게 마치 英國의 巨文島占領은 월렌도르프가 東京에서 露國公館과의 業務때문에 强行된 것처럼 말하면서 萬若 朝鮮政府가 同事件을 全然 몰랐다면 왜 政府는 월렌도르프를 解任시키지 않느냐는 말투로 은근히 解任을 操縱하였다 것이다.<sup>(58)</sup>

한편 이때 駐北京獨逸公使 브란트도 일찍 월렌도르프와의 不和關係 때문에 公使로서 自國民을 保護해야 할 任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월렌도르프를 支持하지 않으므로서 월렌도르프는 困境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우기 이러한 狀況下에 오코너 公使마저 朝鮮政府가 英國의 巨文島占領을 不許하고 계속 英艦 巨文島撤收를 固執하고 있는 것은 朝鮮이 스파이어參事로부터 露教官을 採用하라는 強要를 받고 또한 脊迫을 받고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에 월렌도르프야 만류 引露 反英策의 背後 操縱人物로 斷定하게 되었다. 이때 李鴻章도 월렌도르프가 自身의 屬邦政策을 遂行하기보다 오히려 中國利益에 違背되는 引露策을 推進하였기 때문에 그의 解任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59)</sup>

이와 같이 英艦의 巨文島占領과 스파이어의 公公然한 侵略威脅 등에 直面하게 된 朝鮮政府는 朝露密約說이 월렌도르프의 單獨行爲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는 李鴻章이 推薦한 人物인지라 그의 解任에 앞서 李鴻章과 相議하기 위하여 吏曹參判인 南廷哲과 朴濟純을 天津에 急派하지 않을 수 없었다. 7月 10日(陰 5月 28日)天津에 到着한 이들은 國王이 李鴻章에게 주는 書翰에서 먼저 “露國公使가 6月末(陰)來朝한다 하여 期日이 긴박해서 南廷哲을 密派하는데 同 問題를 어떻게 處理해야 할지” 指導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에 李鴻章은 “월렌도르프가 權力を 장악하여 소란을 피우니 各國이 모두 그를 몹시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實로豫期치 못하였던 일로서 이미 密書를 參判에게 주어 聞國하면 處理하도록 하였다.”라고 前提하면서 “外國인이 官職을 依持하여 自己自身의 私利私慾을 위하여 事實을 歪曲할 수 있으니 만약 權限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服從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後 “貴國의 統署와 稅關事는 반드시 外國人の 協助를 얻어야 하니 美國人을 任用하는 것이 옳을 것<sup>(60)</sup>이라고 말하고 權力의 濫用에서 오는 越權을 過疎하면서 그의 解任에 同意하였다.

그리하여 引露策과 英艦의 巨文島占領 事件에 휘말렸던 월렌도르프는 1885年 7月 27일에는 外務協辦에서 解任되어 天津으로 가서 李鴻章에게 解明을 하였으나 다시 復職되지는 못하였고, 自身의 生活 收入源인 稅關總務司職마저, 9月 4일에는 밀리나고 10月 17일에는 典圖局마저 빼겨 남으로서 그는 결국 中國의 天津으로 되돌아 가자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61)</sup>

## VI. 結論

高宗政府가 開化政策의 一環으로 中國北洋大臣 李鴻章이 월렌도르프를 推薦한 것은 日本의 牽制勢力 및 自身의 朝鮮에 對한 屬邦政策을 遂行하고 經濟的 利權을 獲得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經濟的 的目的下에 起任한 월렌도르프는 李鴻章의 期待하는 들판의 처음부터 自身이 構想한 朝鮮의 資源開發을 通한 遠大한 計劃과 露國과의 關係改善을 構想하였기 때문에 李鴻章의 월렌도르프 推薦은 차중부터 빛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 1883年 5月初代 美公使 푸트(Foote)가 來朝한 朝鮮王國은 國際社會의 基本 外交政策의 一員으로 간주함에 이것이 「依美脫華策」이었다. 여기 「脫華策」에 便乘하여 中國의 主權마저 否認하는 것 같다. 輒·英·朝·獨條約이 締結된 即後 中國과의 外交政策에 틈이 벌어지기 까지 했다.

이와 같이 월렌도르프가 李鴻章의 對朝政策遂行에 逆行되는 外交活動을 展開하는 것 以外에도 自己利權에 關聯된 事業에만 追求함으로써 不正과 利權에 介入한 嫌疑를 벗어날 수 없었다.

(58) Elizabeth Thomson, op. cit., pp.380~381.

(59) 朴昌根, 前揭論文, pp.1~29.

(60) 中日交涉史料(二九〇)附件二 李鴻章與朝鮮在復解件, 朝鮮國王來書 및 復朝鮮四主書 參照.

(61) 高炳烈, 前揭論文, pp.125~140.

그가 英艦의 巨文島 撤收問題과 朝鮮이 中, 日兩國 力勢의 理解과 角逐場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引露策을 講究하는 等 朝鮮의 自主的 外交權을 行使하였다. 當時 國際의 社會狀況으로 因하여 實行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그의 業務處理에 否定의 因要素도 없지 않지만 朝鮮의 行政改革에도 關與해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설치, 各 港海關의 設立, 典圖局의 설치, 機器局의 設立 等 門戶開放 政策에 부응하기 위해 近代의 行政制度改善에 많은 努力を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海關創設에 따른 對日關稅의 低率調整은 朝鮮의 國益에 損失을 가져왔으나 그가 稅關業務量 맡을 通譯員養成을 위한 英語學校 設立은 그 成功與否는 고사하고 朝鮮의 政治, 經濟, 工業化, 教育 및近代화에 기친 功勞는 적지 않았다.

## 參 考 文 獻

### I. 韓·中資料

1. 金允植, 陰晴史, 國史編纂委員會, 1958. 9.
2. 李瑣根, 「韓國史」(最近世編), (서울:乙酉文化社, 1961)
3. 朴日根, 近代韓美外交史, (서울:博友社, 1968)
4. 「高宗純宗實錄」, 卷上中下, (서울:探求堂, 1970)
5. 朴日根, 「전권즈에 대한 駐上海美領事裁判」釜山大學校, 1970.
6.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臺灣, 1970.
7. 「清季中日韓關係史料」卷 II,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72.
8. 朴日根, “高宗朝의 對華借款策”一馬建忠의 論述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論叢, 第15輯, 人文社會科學編, 1973.
9. 朴日根, “Foulk의 韓國主權固守와 近代化에 대한 小考”一初期美國의 對韓外交政策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論文選 第2號, 1977. 12.
10. 朴日根,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서울:一潮閣, 1981).
11. 高柄翊, “穆麟德의 履聘背景”, (서울:正民社, 1983).
12. 민병하, “穆麟德과 韓國傳統社會”, (上同).
13. 李泰永, “Möllendorff와 韓末開化期의 行政改革”, (上同)
14. 崔鍾庫, “뮐렌도르프와 韓國法”, (上同)
15. 朴贊一, “뮐렌도르프의 經濟政策概念研究序說”, (上同)
16. 金在官, “Möllendorff와 韓國의 工業化”, (上同)
17. 이광숙, “뮐렌도르프時代에 비추어진 獨逸狀況”, (上同)
18. 朴日根, “李鴻章의 對朝政策”一英艦의 巨文島事件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論文選 第8號, 1982. 9.
19. 朴日根, “初期 英國의 對朝外交政策研究”一李鴻章의 屬邦政策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論文選 第10號, 1983. 9.
20. Walter Leifer, “뮐렌도르프가 본 甲申政變”, 韓國政治外交史學會編, 論叢第1輯, (서울:平民社, 1985).
21. 朴日根, “甲申政變의 研究”一甲申政變은 自律的 事件이었다. 韓國政治外交史學會編, 論叢第1輯, (上同).

### II. 英美獨 資料

1. Charles Seymour, “The Diplomatic Background of the War 1870—1914,”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2. Morse, H.B.,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1834—1911.* Shanghai, Kelley and Walsh, 1918—1918.
3. Jones, F.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Department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1935.
4. Chein, F.F., *The Opening of Korea, A Study of Chinese Diplomacy, 1876—1885.* The Shoe String Press, Inc., 1967.
5. Hwang, In. K., *The Korean Reform Movement of the 1880s, A. Study of Transition in Intra-Asian Relation.*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Cambridge, Mass., 1978.
6. Park, IL-Keun, *China's Policy toward Korea, 1880—1884.* Seoul, 1981.
7. Watler Leifer, "Paul-Georg von Möllendorff-Gelehrter und Staatsmann in Übergangszeit," (서울: 正民社, 1983).
8. Elizabeth Thomson, "British Attitudes to the Career of Paul-Georg von Möllendorff,"(上同)
9. Park IL-Keun,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서울: Shinmundang, 1982).
10. Park, IL-Keun,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近代 韓國關係 英·美·中 外交 資料集). (Pusan: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4).